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66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절차와 승인기준(총중량 증가 제한, 축간거리 연장 제한, 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만 가능 등)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튜닝에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 추가(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총중량 증가, 축간거리 연장, 원동기 변경 등이 필요하나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승인기준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도 전기차로 변경하는 튜닝과 동일하게 튜닝승인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튜닝승인이 가능한 신기술 튜닝에 추가

나. 전기자동차등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업종 추가(안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튜닝을 하려는 자는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에는 전기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정비업자만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7. 1.(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